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등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강제 노역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성인 남녀와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하는 송출국이다. 강제 노역은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 확립돼 활용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북한 내 수용소는 물론 외국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을 강제 노역으로 내몰고 있다. 북한은 전국의 오지에 위치한 수용소에 약 8만~12만 명을 수용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이 수감자들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사법절차에 의해 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 수용소에서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수감자는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에 걸쳐 벌목, 채굴, 경작 등의 강제 노역을 강요받는다. 수감자들은 비위생적인 환경, 구타, 의료 서비스의 부재, 식량 부족에 처해 있으며 많은 수가 사망에 이른다. 이러한 수용소에서 사망한 주민들의 사체는 화장로와 공동묘지를 이용해 처리된다.

일부 추정 자료에 의하면 해외에서 노역에 동원되는 주민의 수는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다른 추정 자료에 따르면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정확한 숫자는 이들 주민이 노역에 종사하는 지역의 특성상 확인이 어렵다. 가장 많은 인원이 송출되는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북한 계약근로자들은 아프리카, 중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도 노역에 투입되고 있다. 믿을 만한 보고에 의하면 상당수 북한 근로자는 최장 3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유해한 온도 조건에서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등 강제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조건에서 노역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부 소속 '감시인(minder)'들은 근로자의 이동과 통신을 감시한다. 또한, 감시인들은 근로자의 여권을 압수하고 동료 근로자들끼리 서로 감시할 것을 강요한다. 수천 명의 북한 근로자가 벌목, 건설, 광산, 의료,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1년에 단 이틀만을 쉴 수 있고 하루 12~16시간을 일하며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정부가 배정하는 업무에 대해 선택권을 갖지 못하며 직업을 바꿀 자유가 없다. 이들은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인에게 불만을 털어놓을 경우 근로자 본인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는다. 보고에 의하면 북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최대 90퍼센트를 정부 사업에 대한 각종 '자발적'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 및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은 근로자에게 비현실적인 작업량을 하달하고 작업량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작업량을 완수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고 현지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한다. 노동에 대한 대가로 북한 정부에 지급되는 임금에서 근로자 본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때때로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에야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강제노동 수용소를 통한 가혹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형사사법제도와 인권 유린 실태는 인접국 중국에서 북한 주민이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달아나 중국에 밀입국한 북한 여성과 여아 다수가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하며, 일부 북한 여성들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범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그들에 의해 약물을 주입받거나 감금 또는 납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자리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는 강제 결혼을 통해 매춘, 가사 노동, 농사일을 강요받는다. 보고에 따르면, 탈북자들 중에서 일부 여성들은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 남성들의 성 노역이 되거나, 집창촌 또는 인터넷 섹스 사이트를 통해 강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강압에 의해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접대부로 종사한다.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노동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역이나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형벌에 처해진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기준 준수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법 처리나 피해자 보호 혹은 예방 조치 등을 통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에 강제노동 수용소를 운영하고 외국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강제 노역을 제공함으로써 인신매매에 참여했다. 또한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강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권고사항:

수용소와 해외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 노역을 중단해야 한다. 목적국에서 강제 송환된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북한 및 인접국가 내의 인신매매 위험에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정치·경제·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인신매매를 불법화하고 밀입국과 구별되는 별도의 범죄로 인정해야 한다. 인신매매 사건을 수사, 사법처리하고 인신매매범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북한 내 인신매매 피해자와 해외에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해야 한다. 북한 근로자들을 인접국가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양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이직을 허용해야 한다. 강제 노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이동과 통신을 감시하는 강압적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 2000년 유엔에서 채택된 인신매매방지(TIP) 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사법 처리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목표로 대외적으로 알려진 법집행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북한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법집행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인신매매 사범을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로서, 만약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면, 어떤 법률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인신매매범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는 보고된 바가 없다.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을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정부 당국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비정부기구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행해진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았으며,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별 작업이 수행되지 않았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을 포함하여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 노역, 간수에 의한 고문과 성폭력에 노출되었다.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정부에 의해 사형에 처해진 사례들을 보고했다. 형법 제30조는 수용소 수감자의 시민권을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리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 수용소에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학대했다.

예방 노력

정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북한 내의 정부 억압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탈북을 선택함으로써 목적국에서의 인신매매 위험에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인신매매에 대한 인지도 제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관련 교육 실시, 인신매매 적발을 위한 국경 주변 이주자들에 대한 조사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상업적 성행위나 강제노역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눈에 띄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는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방지 교육이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0년에 제정된 유엔 TIP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